

#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제20조의5로 하고, 제2조의2부터 제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 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2조의3(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)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”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.

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.

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
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2조의4(협의회의 운영)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-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

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.

제2조의5(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 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.

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·교육부·외교부·법무부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방송통신위원회·국가정보원·식품의약품안전처·대검찰청·관세청·경찰청·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
2. 마약류 관련 단체·연구기관 또는 학계·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.

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.

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(이하 “실무분과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수사·단속·정보실무분과협의회

2. 치료 · 사회재활실무분과협의회
3. 예방 · 교육 · 홍보실무분과협의회

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협의회”는 “실무협의회”로 본다.

제2조의6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,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2조의7(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(이하 “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”이라 한다)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
2.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,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른 학교교육(이하 “학교교육”이라 한다)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

제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(解囑)”을 “해촉”으로 한다.

제5조의7제3항 중 “개의(開議)”를 “개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”을 “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(이하 “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제20조의6으로 한다.

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제20조의7 및 제20조의8로 하고,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
2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
3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
4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5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· 운영
6.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
7.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 · 운영의 지원

## 8.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

제20조의3(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.

1.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
2.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
3.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.

제20조의4(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) ① 법 제51조의 2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(이하 “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”라 한다)
2.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3. 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

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.

제20조의5(종전의 제2조의2)제1항 및 제2항 중 “법 제2조의3제2항”을 각각 “법 제51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6(종전의 제18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9조”를 “법 제51조의5제1항”으로, “위촉하여야”를 “위촉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9조제2항”을 “법 제51조의5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7(종전의 제20조의2)제1항 중 “법 제51조의2제5항”을 “법 제51조의6제6항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법 제51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51조의6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51조의2제4항”을 “법 제51조의6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법 제49조 및 이 영 제18조”를 “법 제51조의5 및 이 영 제20조의6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3.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 제28조의2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같은 조 제18호 및 제17호로 하고, 같은 조 제18호(종전의 제17호) 중 “법 제49조”를 “법 제51조의5”로 한다.

## 부              층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2조의2 및 제20조의5의 개정규정: 2024년 8월 17일
2. 제2조의7의 개정규정: 2024년 8월 9일
3.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·제4항의 개정규정: 2024년 2월 9일

제2조(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)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제출 기한을 국무총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u>제2조의2(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)</u>	<u>제20조의5(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)</u>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	① ----- <u>법 제51조의3제2항-----</u> ----- ----- ---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u>	② ----- <u>법 제51조의3제2항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2조의2(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<u>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</u>

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 
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  
야 한다.

<신 설>

제2조의3(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

성)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  
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 
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 
속하는 공무원”이란 국립과학  
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.

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  
약류대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 
라 한다) 위원의 임기는 2년으  
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 
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  
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 
한다.

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  
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  
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 
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 
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 
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
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<신 설>

제2조의4(협의회의 운영)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
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

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### <신 설>

제2조의5(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.

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·교육부·외교부·법무부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방송통신위원회·국가정보원·식품의약품안전처·대검찰청·관세청·경찰청·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

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
2. 마약류 관련 단체·연구기관 또는 학계·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.

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.

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 협의회(이하 “실무분과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수사·단속·정보실무분과협의회

2. 치료·사회재활실무분과협의회

3. 예방·교육·홍보실무분과협

## 의회

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 
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. 이 경  
우 “협의회”는 “실무협의회”로  
본다.

## <신 설>

제2조의6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  
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, 실무협  
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 
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 
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  
다.

## <신 설>

제2조의7(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  
육과 학교교육 연계) 국가와 지  
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  
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  
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
을 포함해야 한다.

1.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  
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(이하  
“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”이  
라 한다)을 위한 교육 콘텐츠  
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  
교육에 필요한 사항

2.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 
위한 전문가 육성, 온라인 교  
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

	<p><u>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「교 육기본법」에 따른 학교교육 (이하 “학교교육”이라 한다)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<u>3.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 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</u></p>
제5조의6(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)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	제5조의6(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)  ----- ----- ----- ----- 해촉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7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 · ② (생략)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(開 議)</u> 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5조의7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 · ② (현행과 같음)  ③ ----- 개의----- ----- -----.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)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68조의3제1항에	제8조(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) ①----- ----- -----

따른 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을  
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(이하  
“통합정보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  
하고,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 
의 업무를 위탁한다.

② (생 략)

제18조(마약류 명예지도원) ① 법  
제4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 
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  
군수·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  
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 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
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

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마약  
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 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· 2. (생 략)

③ ~ ⑥ (생 략)

<신 설>

--- 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(이  
하 “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”이  
라 한다)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6(마약류 명예지도원) ①  
법 제51조의5제1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위촉해야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51조의5제1항-----  
-----  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 
사회 재활사업) 식품의약품안전  
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  
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  
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  
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

있다.

1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
2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
3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
4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5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
6.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 재활사업의 홍보
7.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·운영의 지원
8.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

<신 설>

제20조의3(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)

요청 및 처리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.

1.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

2.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

3.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.

<신 설>

제20조의4(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)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(이하 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”라 한다)

2.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
3. 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.

제20조의2(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)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예산서를 식품의

제20조의7(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) ① 법 제51조의6제6항-----

-----

-----

-----

약품안전처장에게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	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 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<u>법 제51조의2제1항</u>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	1. <u>법 제51조의6제1항</u> ----- -----
2. <u>법 제51조의2제4항</u> 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	2. <u>법 제51조의6제5항</u> ----- ----- -----
<u>제20조의3</u> (생 략)	<u>제20조의8</u> (현행 제20조의3과 같음)
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 략)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(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)

4. ~ 12. (생략)

13. 법 제49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·위촉해제 및 그 운영

14. ~ 15. (생략)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8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보건복지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

3.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

4. ~ 12. (현행과 같음)

13. 법 제51조의5 및 이 영 제20조의6-----

14. ~ 15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제28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-----

<p>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(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이하 "건강정보"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"범죄경력정보"라 한다), 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, 제5호,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,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.</p>		
--	--	--
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17. 법 제49조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</u>	<u>18. 법 제51조의5-----</u> -----
18. (생 략)	<u>17. (현행 제18호와 같음)</u>
19. ~ 21. (생 략)	19. ~ 21. (현행과 같음)